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 
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1213
------	------

2023. 9. 15.  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년 8월 14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1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】

-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3.9.11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문화본부장 최경주)

### 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는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및 시설관리, 공연예술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.

나. 이에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사업개요

1) 사 무 명 : 세종문화회관 출연금

2)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

3) 필요성: 서울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, 공연, 전시, 세종문화회관 운영 등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

4) 사무내용

- 세종문화회관의 운영
-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
-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, 보급 및 조사·연구
-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
-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위탁하는 사업

5) 소요예산 : 46,294,566천원

※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

### 나.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기관 개요

1) 소재지: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

2) 규 모: 대지 55,758㎡, 건물 64,094㎡ (지하 3층, 지상 6층)

- 공연장(세종대극장, M씨어터, 체임버홀, S씨어터), 전시관(세종미술관, 세종충무공이야기), 교육시설(세종예술아카데미) 등

### 3) 전경 및 위치도

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### 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예산편성

###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##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#### 가. 동의안의 개요

- 동의안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안에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을 편성 하기에 앞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.

#### 나. 세종문화회관 현황

- 세종문화회관은 공연, 전시 등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,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운영을 통해 시민 문화복지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되어 공연, 전시, 사회공헌, 대관 등의 사업을 추진 하고 있음.
- 현재 세종문화회관은 3본부(경영본부, 공연예술본부, 문화사업본부) 1실(감사실) 15팀 8예술단(국악관현악단, 청소년국악단, 무용단, 뮤지컬단, 합창단, 소년소녀합창단, 오페라단, 극단) 1TF(리빌딩추진단)에 사무처 직원 144명, 예술단 176명, 시설 관리직 114명 총 434명의 정규인력을 갖추고 있으며(2023.7.31.기준), 세종 문화회관과 북서울꿈의숲 아트센터 등 2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.

#### < 세종문화회관 인력 현황 >

구분	정원	현원	과부족	비고
계	526	434	△92	
사무처	158	144	△14	
예술단	244	176	△68	
시설서비스	124	114	△10	

## 다. 출연의 규모 및 적정성

- 세종문화회관은 ‘특별한 경험으로 시민 삶에 가치를 더하는 세종문화회관’이라는 비전에 따라 시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예술을 제공하고자 콘텐츠 제작극장, 차별화된 예술단 운영 등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난해 대비 12.2%가 증액된 462억 9천 5백만원의 출연동의안이 제출되었음.

### < 최근 5개년 간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편성 현황 >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(안)
계	56,049	57,121	57,061	61,522	64,902
출연금	35,823	34,519	38,501	41,268	46,295
자체수입 등	20,226	22,602	18,560	20,254	18,607
자주재원 비율	36.1%	39.6%	32.5%	32.9%	28.7%

- 2023년 상반기 전체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<sup>1)</sup>을 살펴보면 공연 건수는 총 8,541건으로 2022년 상반기 대비 24.4% 증가하였음. 이는 코로나19 영향을 벗어나 공연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.
- 이에 따라 시민의 일상에 더욱 가깝고 편안한 예술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 예산안에서는 각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, 수입부문에서 서울시 출연금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자체수입은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로 증감이 가변하므로 고정적인 수입원을 발굴하는 등 수입구조를 개선하여 자주재원 비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.

1)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「2023년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」

## 라. 출연금 등 예산편성 현황

### 1) 수입예산

- 세종문화회관의 수입예산안 총액은 649억 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8천만원(5.5%)이 증액되었고 이 중 출연금은 462억 9천 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0억 2천 7백만원(12.2%)이 증액되었음.

#### < 2024년도 세종문화회관 수입예산안 총괄 >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24년도	2023년도	증감	증감률
계	64,901,620	61,521,774	3,379,846	5.5%
출연금	46,294,566	41,267,508	5,027,058	12.2%
자체수입	15,607,054	18,543,266	△2,936,212	△15.8%
순세계잉여금	3,000,000	1,711,000	1,289,000	75.3%

\* 2023년도 예산은 본예산 기준임.

### 2) 지출예산

- 지출예산안 총액은 649억 2백만원이며 이 중 ▶인건비는 311억 3천 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9천 8백만원(9.9%)이 증액되었고, ▶관리비는 154억 8천 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천 4백만원(△0.7%)이 감액되었으며, ▶사업비는 179억 1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8천 9백만원(4.6%)이 증액되었음.
- 지출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는 명예퇴직수당을 신설하면서 발생한 10억원과 인건비 인상률 3.1%(물가1.7%+경력1.4%)가 적용되어 인건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임.

## < 2024년도 세종문화회관 지출예산안 총괄 >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24년도	2023년도	증감	증감률
계	64,901,620	61,521,774	3,379,846	5.5%
인건비	31,139,454	28,341,185	2,798,269	9.9%
관리비	15,488,686	15,602,271	△113,585	△0.7%
사업비	17,910,180	17,120,915	789,265	4.6%
예비비	363,300	457,403	△94,103	△20.6%

○ 지출예산안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.

- 증액 사업은 ▶ 급여, 수당 등 보수 15억 6백만원(6.4%), ▶ 퇴직급여 12억 2천 6백만원(46.9%), ▶ 사무관리비 4억 8천 3백만원(31.7%), ▶ 예술단공연 16억 4천 7백만원(23.2%), ▶ 기획공연 3억 8천 5백만원(13.8%), ▶ 사회공헌사업 7억 3천 5백만원(57.2%) 등임.
- 감액 사업은 ▶ 위탁관리비 11억 3천 3백만원(△36.4%), ▶ 시설운영사업 4억 3천 3백만원(△27.9%), ▶ 대행사업 20억 9천 6백만원(△100.0%) 등임.

### 3) 주요 증액 사업

#### < 2024년도 세종문화회관 지출예산 중 주요 증액사업 >

(단위 : 천원)

세부사업명	2024년	2023년	증감액	증감률
보수	25,206,625	23,700,255	1,506,370	6.4%
퇴직급여	3,841,336	2,615,031	1,226,305	46.9%
사무관리비	2,010,885	1,527,393	483,492	31.7%
예술단공연	8,737,400	7,090,900	1,429,100	23.2%
기획공연	3,185,000	2,800,000	385,000	13.8%
사회공헌사업	2,020,000	1,285,000	735,000	57.2%

\* 3억원 이상 증액된 세부사업임.

- ‘보수’는 정규인력 운영을 위한 기본급여, 각종 수당, 복리후생비의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2024년 인건비 인상률(정책1.7%+호봉1.4%)을 반영하고, 2023년에 채용될 신규인원의 임금 및 기타 수당 등을 포함하여 총 15억 6백만원을 증액함.
- 다만 세종문화회관 임금구조가 호봉제에 따른 초임자와 장기근속자 간의 임금 격차가 늘어나고 있어 성과중심의 성과급제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음.
- ‘퇴직급여’는 정규인력에 대한 법정 퇴직수당을 적립하기 위해 12억 2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, 2024년에 정규인력 중 5명의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당 10억원이 증액되었음.
- ‘사무관리비’는 4억 8천 3백만원이 증액 편성된바,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(한글, 엑셀 등)의 라이선스 비용 1억 5천 8백만원과 기운영 중인 티켓 관리 프로그램 개편을 위한 비용 2억원 등임.
- ‘예술단 공연’은 제작극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8개 전문예술단의 공연 예산 16억 4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음.
- 증액의 주요 원인은 예술단 중 오페라단의 정기공연이 3회에서 4회로 확대되었기 때문임.
- ‘기획공연’은 국·내외 문화예술계의 최정상급 아티스트와 협업을 위해 3억 8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, 이는 ‘세종 콘서트 시리즈’를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임.
- ‘사회공헌사업’은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



위한 사업으로서 7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된바, 광화문 광장 야외 공연, 썸머페스티벌, 천원의 행복, 예술로 동행 등의 확대를 위한 10억원 등임.

#### 4) 주요 감액 사업

##### < 2024년도 세종문화회관 지출예산 중 주요 감액사업 >

(단위 : 천원)

세부사업명	2024년	2023년	증감액	증감률
위탁관리비	1,981,924	3,114,628	△1,132,704	△36.4%
시설운영사업	1,116,715	1,549,435	△432,720	△27.9%
대행사업	-	2,096,000	2,096,000	△100.0%

\* 3억원 이상 감액된 세부사업임.

- ‘위탁관리비’ 는 지난해 편성되었던 ▶경영정보시스템(업무포털) 구축 사업, ▶업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11억 3천 3백만원이 감액되었음.
- ‘시설운영사업’ 은 안정적인 공연 운영을 위한 공연대표서비스 예산이며, 지난해 편성한 공연장 통합운영시스템 비대면(무인) 서비스 구축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4억 3천 3백만원이 감액되었음.
- ‘대행사업’ 은 시설 소유자인 서울시 문화본부가 출연동의안 제출 시점까지 세종문화회관이 수행할 대행사업을 확정하지 않아 전액 감액된 것임.

##### < 2024년도 세종문화회관 지출예산안 세부내역 >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24년	2023년	증감액	증감률
계	64,901,620	61,521,774	3,379,846	5.5%
인건비 소계	31,139,454	28,341,185	2,798,269	9.9%

구분	2024년	2023년	증감액	증감률
인건비	26,009,353	24,478,863	1,530,490	6.3%
보수	25,206,625	23,700,255	1,506,370	6.4%
기간제근로자등보수	802,728	778,608	24,120	3.1%
퇴직급여	3,841,336	2,615,031	1,226,305	46.9%
평가급	1,288,765	1,247,291	41,474	3.3%
관리비 소계	15,488,686	15,602,271	△113,585	△0.7%
일반운영비	6,158,193	5,425,516	732,677	13.5%
사무관리비	2,010,885	1,527,393	483,492	31.7%
공공운영비	2,618,106	2,415,628	202,478	8.4%
행사운영비	183,500	191,500	△8,000	△4.2%
광고선전비	175,400	102,420	72,980	71.3%
복리후생비	1,170,302	1,188,575	△18,273	△1.5%
여비	87,880	81,400	6,480	8.0%
업무추진비	112,584	103,392	9,192	8.9%
직무수행경비	176,000	176,000	0	0.0%
교육훈련비	330,918	221,220	109,698	49.6%
수선유지교체비	3,131,749	3,123,936	7,813	0.3%
관서업무비	136,720	114,240	22,480	19.7%
위탁관리비	1,981,924	3,114,628	△1,132,704	△36.4%
포상금	35,400	26,200	9,200	35.1%
연금부담금등	3,095,056	2,928,336	166,720	5.7%
자산취득비	242,262	287,403	△45,141	△15.7%
사업비 소계	17,910,180	17,120,915	789,265	4.6%
공연사업	11,922,400	9,890,900	2,031,500	20.5%
예술단공연	8,737,400	7,090,900	1,646,500	23.2%
기획공연	3,185,000	2,800,000	385,000	13.8%
사회공헌사업	2,020,000	1,285,000	735,000	57.2%
전시사업	912,860	721,095	191,765	26.6%
교육사업	480,200	368,200	112,000	30.4%
대관사업	1,233,005	1,030,285	202,720	19.7%
시설운영사업	1,116,715	1,549,435	△432,720	△27.9%
대행사업	0	2,096,000	△2,096,000	△100.0%
기획사업	225,000	180,000	45,000	25.0%
예비비	363,300	457,403	△94,103	△20.6%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적위원 9명, 참석위원 8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121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8월 14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가. 서울시는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을 설립하고 법인의 운영 및 시설관리, 공연예술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

나. 이에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1) 사무명 : 세종문화회관 출연금

2)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-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

3) 필요성 : 서울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, 공연, 전시, 세종문화회관 운영 등 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

#### 4) 사무내용

- 세종문화회관의 운영
- 공연예술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
-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·관리, 보급 및 조사·연구
-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
-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

5) 소요예산 : 46,294,566천원

※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

#### 나.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기관 개요

1) 소재지 :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

2) 규 모 : 대지 55,758 $m^2$ , 건물 64,094 $m^2$  (지하 3층, 지상 6층)

- 공연장(세종대극장, M씨어터, 체임버홀, S씨어터), 전시관(세종미술관, 세종충무공이야기), 교육시설(세종예술아카데미) 등

3) 전경 및 위치도

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4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문화정책과 문화협력팀 탁성은 (☎ 2133-2519)